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 -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

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 2년까지 갑이 제공하는 제반 교재 및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인쇄, 무단복제,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을은 을의 피고용인에 의한 제1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을은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제40조 [위약벌] 규정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40조 [위약벌 등]

- ①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제22조 비밀유지 의무, 제23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 및 법원 판단

- (1) 제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 (2) 제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 제40조 [위약벌 등] 해석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별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40조 제1항이 '위약별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해당 조항을 위약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은 '제40조 위약별 규정의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 사건 가맹점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도 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문언상 당사자들의 의사가 해당 금액을 위약별로 정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약정한 50,000,000원 범위 내의 손해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상에 같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취지 참조), ③ 비밀유지 의무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입증의 책임을 덜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에서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40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의 비밀누설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 감액 사유

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1) 한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원고 회사가 마련한 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자로 작성된 위 손해배상 예정조항에 대하여 액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 원고 회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승계를 거절하여 E이 다른 가맹점 브랜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고 회사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 독서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비용은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별

첨 2), 독서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 1인당 5,000 원~6,000원으로 정하였으며(제16조 제1항), 브랜드 유지 관리비 및 관리 프로그램 사용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회원비는 월 매출액의 5%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며 기대한 월 매출액 18,000,000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약 5년 이상의 회원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대금 총액이 이 사건 가맹점의 경영권이나 도서 뿐만 아니라 회원, 시설, 집기(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 당시 컴퓨터 등 기자재 가격으로 25,300,000원, 초도물품 가격으로 24,4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등을 모두 포함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해지는 등 위 조항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가맹점 계약 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예정하거나 지출한 비용보다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은 '제반 교재 및 교구, 운영매뉴얼, 가맹계약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로써,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보다 완화되어 넓게 약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그 예정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그 예정액의 60% 상당액인 30,000,000원(= 50,000,000원 × 60%)으로 감액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